

1. 예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7,532,105	12,225,963
일반회계	368,014,169	11,040,425
특별회계	39,517,936	1,185,538
기타특별회계	39,517,936	1,185,5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54,827	97,645
수질개선특별회계	11,673,015	350,1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0,144	16,804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7,750,000	232,5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44,805	28,34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78,321	110,350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19,000	3,5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57,738	46,73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962,350	148,871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70,600	2,118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475,800	134,274
원외탕전원특별회계	471,336	14,140

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23,045,438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13,825,545천원을 포함한다.

제 6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